

서울고등법원 2022. 5. 27 선고 2022나200131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2. 5. 27 선고 2022나2001310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11. 30 선고 2018가합58998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

피고, 피항소인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석

변론종결 2022. 5. 13.

판결선고 2022. 5. 27.

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. 11. 30. 선고 2018가합58998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주위적으로, 피고는 사회복지법인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
예비적으로, 피고와 사회복지법인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사회복지법인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주위적으로, 피고는 사회복지법인 C에게 별지1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
예비적으로, 피고와 사회복지법인 C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사회복지법인 C에 별지1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(별지1 목록 제3, 4,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는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,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였으나,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별지1 목록 제3, 4,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.)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○ 제3쪽 15줄의 “이 사건 법인”을 “원고가”로 고쳐 쓴다.

- 제3쪽 20, 21줄의 “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고,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(대법원 2021다277693호).”를 “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이 상고하였으나, 2021. 12. 30.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[대법원 2021다277693호(본소), 2021다277709호(반소)].”로 고쳐 쓴다.
- 제5쪽 글상자 아래 3줄의 “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다.”를 “이 사건 각 부동산이다.”로 고쳐 쓴다.
- 제6쪽 2줄의 “(이하 ‘이 사건 각 토지’라 한다)”를 삭제하고, 3~5줄의 “(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합하여 … 한다).”를 “(이하 별지1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‘이 사건 계쟁 부동산’이라 하고, 이 사건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‘이 사건 각 매매계약’, 이 사건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‘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’라 한다).”로 고쳐 쓴다.
- 제6쪽 7줄의 “피고는 원고가”를 “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법인”로 고쳐 쓴다.
- 제6쪽 아래에서 15, 16줄의 “이 사건 법인이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(서울고등법원 2021누56765호).”를 “이 사건 법인이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. 1. 20.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(서울고등법원 2021누56765호), 이 사건 법인이 위 판결에 대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(대법원 2022두37158호).”로 고쳐 쓴다.
- 제6쪽 17줄의 “15 내지 20호증”을 “15 내지 20, 22호증”으로 고쳐 쓴다.
- 제7쪽 3줄의 “이 사건 각 부동산”을 “이 사건 계쟁 부동산”으로, 5줄의 “각 매매계약”을 “이 사건 각 매매계약”으로 각 고쳐 쓴다.
- 제7쪽 17줄의 “부적법하다.”를 “부적법하고, 설령 적법하다 하더라도, 서울특별시장의 이 사건 허가 취소처분은 그 실질이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여 장래효만 가지는 이상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,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.”로 고쳐 쓴다.
- 제8쪽 12줄의 “D와 이 사건 법인을 도급인으로”를 “원고와 사이에 D와 피고를 도급인으로”로, 13줄의 “계약서’이라 한다”를 “계약서’라 한다”로 각 고쳐 쓴다.
- 제10쪽 글상자 아래 4, 5줄의 “피고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”를 “이 사건 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”로 고쳐 쓴다.
- 제13쪽 2줄의 “원고가”를 “이 사건 법인”으로, 3줄의 “피고가”를 “원고”로 각 고쳐 쓴다.

- 제13쪽 각주 3)의 내용 중 “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(대법원 2021다277570호)”를 “원고가 상고하였으나, 2021. 12. 30.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(대법원 2021다277570호)”로 고쳐 쓴다.
- 제14쪽 16, 17줄의 “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”를 “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,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”로 고쳐 쓴다.
- 제14쪽 17, 18줄의 “이 사건 건물 외에도 건물 4개동”을 “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건물 5개동”으로, 18줄의 “토지 5필지”를 “토지 4필지”로 각 고쳐 쓴다.
- 제15쪽 2줄의 “최소한 위 금액 이상일 것으로”를 “이와 비슷할 것으로”로 고쳐 쓴다.
- 제16쪽 15줄 다음 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, 16줄의 “라)”를 “마)”로 고쳐 쓴다.
 “라)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16. 9. 19.경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당시 그 신청서에 기재한 이 사건 법인의 부채 약 220억 원을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므로, 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법인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.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법인이 위 신청서에 추정 부채 총계를 22,240,756,000원(= 확정 부채 8,167,796,000원 + 미확정 부채 14,072,960,000원)으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,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위 신청서에 기재된 추정 부채 총계는 이 사건 법인이 스스로 신고한 금액에 지나지 않고 그중 미확정 부채가 140억여 원에 이르는바, 전체 부채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채무 내역을 확인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법인이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기 위해 법인의 미확정 부채를 과다 추정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, ② 설령 위 신청서에 기재된 추정 부채 총계를 그대로 신뢰한다 하더라도,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기본재산은 위 추정 부채 총계를 훨씬 초과하는 토지 21건, 건물 31건 등 합계 약 43,326,254,000원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위 추정 부채 총계만을 들어 이 사건 법인이 위 처분허가 신청 당시나 그 이후에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.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.”
- 제17쪽 19, 20줄 및 제18쪽 9줄의 각 “2017. 11. 28.”을 “2017. 12. 28.”로 각 고쳐 쓴다.
- 제18쪽 8, 9줄의 “이 사건 매매계약”을 “이 사건 각 매매계약”으로 고쳐 쓰고, 9, 10줄의 “채무초과상태 즉 무자력이었거나,”를 삭제한다.

- 제18쪽 10줄 및 제19쪽 7줄의 각 “이 사건 각 토지를”을 “이 사건 계쟁부동산을”로 각 고쳐 쓴다.
- 제18쪽 12줄의 “이 법원의”를 “제1심 법원의”로 고쳐 쓴다.
- 제18쪽 14줄의 “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하고도”를 “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도”로 고쳐 쓴다.
- 제18쪽 15줄의 “6개동”을 “7개동”으로, 18줄의 “2017. 9. 7.”을 “2017. 9. 4.”로 각 고쳐 쓴다.
- 제18쪽 마지막 줄부터 제19쪽 5줄까지의 “③ 이 사건 법인이 … 선불리 볼 수 없는 점”을 “이 사건 법인이 2016. 9. 19.경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당시 그 신청서에 추정 부채 총계를 22,240,756,000원(= 확정 부채 8,167,796,000원 + 미확정 부채 14,072,960,000원)으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,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추정 부채 총계만을 들어 이 사건 법인이 위 처분허가 신청 당시나 그 이후에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”으로 고쳐 쓴다.
- 제19쪽 6, 7줄의 “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이었거나,”를 삭제한다. ○ 제19쪽 11줄의 “이유 없다” 바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.

“[나아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초과의 사실은 사해행위 당시뿐 아니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 시에도 존재하여야 하는바(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7다54849 판결 참조), 이 사건 법인이 현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제3의 나.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]”

2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,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원형, 판사 김재령, 판사 심영진

별지